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연월일	2025. . .
발 의 자	김영길 의원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길 의원 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25. . .

발 의 자 : 김영길 의원(1인)

찬 성 자 : 김영태·김정도·박세채·이명희
이상호·이정희·이지연·정지원
의원(8인)

1. 제안이유

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 기준을 상위법에 맞게 명확히 하고, 재난 등 불가항력 상황에 대한 반환 기준을 반영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용료의 반환(안 제10조의2)

나. 사용료 감면 요율(별표 4)

3. 조례안: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21조의3

나. 부서검토: 체육진흥과 의견제출(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

라. 기 타: 신·구조문대비표(붙임)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의2(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

1. 사용료의 반환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2에 따른다.
2. 결제 당일 반환 시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다만, 사용 개시 시간이 경과하거나 사용을 개시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다.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 발생이 예고되거나 발생한 경우 다음 각 목과 같이 반환한다.
 - 가. 사용 개시일 이전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한다.
 - 나. 사용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일까지 사용일 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후 반환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용료 감면 요율(제10조의3 관련)

구분	대 상	감면요율	비고
행사 및 대회	다음 각 호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1.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2.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국민생활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광역자치단체 이상의 협회장기 대회	100분의 80	
개 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 유공자와 그 배우자 2. 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3. 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 보조자 1명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 의사자(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경우 의사자의 활동 보조자 1명 포함) 2. 의사자유족 중 선순위자 3. 의사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국군포로송환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 등록포로 2.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활동보조자 1명 포함)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수영장 월 회원 중 10세부터 55세까지의 여성	100분의 50	
	수영장 월 회원 중 10세부터 55세까지의 여성	100분의 10	

※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구미시 다자녀 가정의 감면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발급 3개월 미만) 또는 구미시 다등e카드, 한부모가족 감면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발급 3개월 미만),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의 감면인 경우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의2(사용료의 반환) ①납부된 사용료는 미 사용한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생활관 시설보수 등으로 인한 자체사정에 따라 시설사용이 불가능하여 사용이 취소된 때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이용자의 입원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을 취소한 때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금액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항제1호의 경우 사용개시일 이전에는 사용료의 전액과 총사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합산하여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총사 	<p>제10조의2(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용료의 반환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2에 따른다. 2. 결제 당일 반환 시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다만, 사용개시 시간이 경과하거나 사용을 개시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다.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 발생이 예고되거나 발생한 경우 다음 각 목과 같이 반환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사용개시일 이전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한다. 나. 사용개시일 이후에는 취소일까지 사용일 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후 반환한다.

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합산하여 반환한다.

2. 제1항제2호의 경우 사용개시

일 이전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에
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반환한다.

3. 제1항제3호의 경우 사용개시

일 이전에는 총사용료의 10퍼
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에는 취소일
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사용료의 10퍼센트
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반환한다.

③ 삭 제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① 체육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 3. (생략)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일반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용료를 반환할 것

가. 일반이용자가 본인의 사정상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나.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업의 폐업, 휴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5. (생략)

② (생략)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

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책임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

다. 삭제

2. ~ 13. (생략)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 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다. 삭제

3. ~ 7. (생략)

제21조의3(이용료나 교습비의 반환) 체육시설업자는 법 제22조제1항 제4호 각 목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이용료나 그 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의 교습비(이하 "이용료"라 한다)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않은 때에는 별표 3의2의 이용료의 반환기준에 따라 해당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체육시설업자가 이용료의 반환을 지연할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반환 이용료에 연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함께 반환해야 한다.

검 토 의 견 서

부서명: 체육진흥과

조 례 명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 사항

- 근거 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21조의3

□ 주요 사항

- 사용료 반환 기준 정비(안 제10조의 2)
 - 상위법 기준 적용(「체육시설법 시행령」 별표 3의2)
 - 재난 등 불가항력 상황에 대한 반환 기준 반영
- 사용료 감면 요율(안 별표 4)
 - 상위법 기준 적용(「체육시설법 시행령」 제4조의2)
 - 감면대상인 행사주관단체 확대(지역단체·가맹경기단체 등을 포함)

□ 검토 결과

- 상위법 기준 적용으로 법적 정합성을 확보
- 재난상황 등 불가항력 상황에 대한 반환 기준을 기존보다 포괄적으로 반영하여 이용자 측면 편익 증대
- 지역 및 가맹경기단체의 행사 감면을 통한 지역체육의 활성화

□ 조례 제(개)정에 따른 향후

- 기대효과: 이용자 권익 보호 및 지역체육 활성화
- 소요예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문 제 점: 해당사항 없음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사용료 반환 기준(안 제10조의2)
- 사용료 감면 요율(안 별표 4)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사용료 감면대상인 행사주관단체가 확대되며 세입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 정확하게 추계하기 어려우며 연평균 1억원 미만일 것으로 추정됨

4. 작성자

- 체육진흥과 체육시설1팀 박지영(☎480-4915)